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심사보고서

2024. 12. .
국방위원회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9월 30일, 강대식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0월 2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국방위원회(2024.11.15.)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3차 법률안심사소위원회(2024.11.26.) 상정, 축조심사, 의결(대안
반영 폐기)

제7차 국방위원회(2024.11.28.) 상정, 소위심사보고, 찬반토론, 의결
(대안반영 폐기)

2. 제안설명의 요지

(강대식의원)

현행법은 병역의무자가 부재시 세대주 등에게 통지서를 송달하고,
세대주 등은 이를 병역의무자에게 지체 없이 전달하도록 규정하고 있
음.

그러나, 통지서를 송달받은 세대주 등이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대리수령인이 사진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병역의무자에게 전달하는 경우 현행법에 따른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법적조항이 없으며, 현행법상 현실적인 수령행위를 전제로 하고 있으므로 병역의무자가 통지서의 내용을 이미 알고 있음에도 응소를 기피한 경우 처벌이 어려워 통지서 전달 방법에 대한 법령개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음.

이에 대리수령인이 병역의무자에게 통지서를 전달하는 경우 본인에게 직접 전달하는 방법 외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정보화시대에 맞춘 다양한 방법을 규정함으로써 대리수령인의 전달 의무에 대한 과도한 부담은 완화하고, 병역의무자의 병역의무 해태를 방지하고자 함 (안 제6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류승우)

- ☐ 현행법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대신 송달받은 수령인이 통지서를 전달하도록 의무를 부과하고, 의무 미이행 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전달 방식에 대하여는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아 대면하여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고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한 비대면 전달 시 대리 수령인의 통지서 전달 행위가 적법한 전달 방식인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있는 실정임.

□ 개정안은 병역의무부와 통지서를 대신 송달받은 수령인이 병역의무부와 통지서를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세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식으로 전달하도록 규정하여 통지서 전달 행위 방식의 유효성에 대한 논란을 해소함으로써 적법하게 통지서를 전달받지 못했다는 사유로 병역의무를 기피하는 경우를 방지할 수 있다는 점에서 타당한 입법 조치로 보임.

□ 한편, 안 제6조제6항에서 병역의무부와 통지서 수령인을 선정하고자 하는 경우 미리 통지서 수령인에게 수령에 관한 동의를 받도록 하는 개정 내용은 대리 수령인이 통지서를 전달하지 않는 경우 6개월 이하의 징역 등에 처해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사전에 수령에 대한 동의 절차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판단되며,

안 제6조제5항에서 ‘세대주’를 ‘같은 세대 내의 세대주’, 고용주를 ‘본인의 고용주’로 하는 등 일부 조문의 자구를 수정한 개정 사항 또한 법 조문의 명확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하다 보임.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부승찬)

강대식의원 대표발의안 등 3건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우

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함.

대안의 주요내용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 대리 수령자가 병역의무부과 통지서를 병역의무부과 대상자에게 전달할 시 직접 전달하거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으로 전달하도록 규정하여 통지서 전달 방식을 명확히 하려는 것임.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